

#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## 1.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이전 협의·권고 절차 마련(안 §6조, §12조, §27조의2, §32조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전시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던 정부의 외국환 거래 관련 세이프가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
  - 현행법의 전신인 「외국환관리법」 제정시('61년)부터 도입되었으나, '97년·'08년 위기사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실제 발동사례 없음
    - \* 터키('89년), 이스라엘('11년), 중국·아르헨('19년) 등은 위기사 자본통제 실시
- 해외증권투자, 대체투자 등 국민·기업·기관투자자의 투자 방식이 다양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위기대응수단도 다변화할 필요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세이프가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무 부과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, 시정명령 신설
- 위기발생시 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 한은·정부기관·금융회사 등에 대한 보관·예치·매각 의무 부과 대상을 증권·파생상품까지 확대
- 정부의 시정명령, 자료제출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외국환 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한 등록·인가취소, 영업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
- 정부의 시정명령, 자료제출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마련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**라. 입법효과**

- 외국환거래의 정지, 자본거래 허가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협의·시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거래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
- 위기발생시 외환당국의 정책대응 수단의 탄력성 확대

**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**

- 해당없음

**바. 그 밖의 참고사항**

- 해당없음

## 2. 전자거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고객외국환전자증개업 도입

(안 §9조의2, §10조, §27조의2, §32조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부족한 원화 접근성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원화표시 자산에 대한 매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- 최근 전자거래 보편화로 정부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면서도 역외 원화시장 개설(시장개방)과 유사한 접근성 보장이 가능한 환경 조성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전자장비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각 금융기관들의 환율 정보 공시, 주문 접수·거래 매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전자증개업자 인가 조항 마련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원화 거래·결제 등에 있어 글로벌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여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및 국내 금융자산에 대한 접근성 확대

### 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없음

### 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

### 3. 시장교란행위 제재 강화(안 §10조의3, §12조, §27조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참여에 대응하여 유사시 외환당국이 적기 대응하기 위한 수단 마련 필요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영업정지, 등록 취소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
- 현행과 동일하게 시장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벌칙규정 정비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개방 등 외환시장 환경변화에 상응하는 대외건전성 안정 목적의 정책대응 수단 마련

#### 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없음

#### 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

#### 4. 「국채법」 개정 반영(안 §13조)

#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'14.12월 개정된 「국채법」 개정에 상응하도록 법률 정비

제6조(외화국채 등)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#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개정에 맞추어 「국채법」 인용 조문을 수정(제4조→제6조)

#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##### 라. 입법효과

- 법률간 연계 확대 및 정합성 제고

##### 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없음

##### 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